제418회국회(정기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검 토 보 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66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4

1. 총괄적 검토 ····· 4

(1) 법 제정의 추진 배경 ····· 4

(2) 제정안의 입법취지 ····· 6

(3) 법률안의 구성체계 ····· 7

2. 주요 조문별 검토 ····· 8

(1)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8

(2)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제4조) ····· 12

(3)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신설 (안 제5조～제6조) ····· 16

(4)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안 제7조～제8조) ····· 19

(5)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9조) ····· 24

(6) 지원대상학생의 선정(안 제10조) ····· 25

(7)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안 제11조) ····· 27

(8) 학생별 지원·관리 및 업무의 지도·감독(안 제12조～제13조) ····· 31
(9) 연수(안 제14조) ····· 34
(10)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안 제15조) ····· 35
(1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안 제16조) ····· 37
(12)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17조～제18조) ····· 40
(13) 개인정보 처리정지 등(안 제19조) ····· 45
(14)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0조) ····· 47
(15) 부칙(안 부칙) ····· 48

※ 참고자료

1. 교육부 학생 지원제도 및 지원사업 현황 ····· 49
2.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전후 비교 ····· 53
3.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입법례 비교 ····· 54

Ⅰ.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성국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8. 5.

다. 회 부 일 : 2024. 8. 6.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교육 결손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또한 학교에서는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서 학생의 배움을 저해하는 원인을 해소해 학생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별·사업별 지원 체계로 인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적기에 학생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학생기에 해소되지 못하고 성인기의 범죄행동, 약물남용, 고립 등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사회가 부담해야 할 미래의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아

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임.

이에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속히 발견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효율적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교육감이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이 요청할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교육복지, 심리상담, 학습지원 교육, 긴급지원 등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1) 법 제정의 추진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1] 현상의 지속으로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기초학력 부진학생, 교육복지 지원대상,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2]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음.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 학업지원, 상담(심리·정서) 지원, 다문화·특수교육, 안전지원을 중심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학업중단숙려제, 위(Wee) 프로젝트 등의 사업[3]을 진행하고 있음.

이처럼 학습 저해 원인을 해소하여 학생이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간 연계 곤란, 종합적인 진단 및 지원 체계 부재, 단기 지원 중심

---

1) ('23) 합계출산율: 0.7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 547만명 → ('30) 406만명(△26%) → ('40) 328만명(△40%) (통계청, 초중고 학령인구 추계)

2) 【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 】

연도	교육복지 지원대상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2016	238,978명	46,954명	85,012명
2021	310,391명(+29.9%)	168,645명(+259.2%)	103,695명(+22%)

자료: 교육부

3) ① 교육복지[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교육비 지원], ② 학업지원[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학업중단숙려제 및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③ 상담(심리·정서) 지원[위(Wee) 프로젝트], ④ 다문화·특수교육[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특수교육기관], ⑤ 안전지원[아동학대 예방, 학교폭력,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학생 등 지원]
※ [참고자료 1] 학생 지원제도 현황 참고(자료: 교육부)

등으로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현재의 사업체계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조기 발굴과 개입보다는 사안별 처리에 급급하고, 복합적 요인을 가진 학생의 실태 파악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사각지대 존재, 업무 과중, 학부모 미협조 시 지원 곤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사업별로 존재하는 분절적 학생 지원 시스템을 '학생 중심 맞춤형 지원체계'로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 정부는 2022년 5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교육분야 국정과제[4]로 확정하고, 2022년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안)[5]을 발표하였음.

제정안은 현 제도가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임.

---

4)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ㅇ (교육 사각지대 해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 지원 등) 체계 마련

5)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안) 】

조기발굴-예방 중심의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구축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성공모델 개발·확산
[조기 발굴] 사업별로 기 설계된 지원대상 발굴→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 등을 관찰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	[제도적 기반 구축]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과 실태조사 실시
[맞춤형 지원] 사업별 지원→ 사업간 연계와 전문인력간 협력으로 학생의 복합적 문제 해결 지원	[다양한 운영 모델 개발·확산] 3년간 선도학교(100교) 및 시범교육지원청(90개) 지정·운영, 협력적 학생지원 역량 강화, 통합 가이드북 개발·보급
[지역 연계] 담당자 역량에 따라 연계 수준 결정→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 및 활성화	[지역 연계 활성화] '23년 교육복지안전망을 156개('22년 114)로 확대 구축, 전국 단위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지역 연계 네트워크 체계화
[정보 연계] 사업별 수기 관리→ 법 제도 마련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시 연계	[행·재정적 지원]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KEDI)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시도교육청 최초로 사회복지직렬 신설 및 임기제 사회복지공무원 임용

자료: 교육부

(2) 제정안의 입법취지

제정안은 기초학력 부진,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현재의 개별 사업별 지원체계로는 학생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로의 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즉, 현재의 지원체계로는 학생 지원 사업들을 총괄·연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사업간 연계 및 전문인력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복합적 문제해결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상담, 복지 지원 등에 필요한 민감한 학생 정보에 대한 수집·관리·연계·활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정보단절 등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학생 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연계・활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어려움이 있는 학생 조기 발굴·개입,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확보,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간 실질적 네트워크 운영,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정보 관리・연계・활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법률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의 법률 제명(題名)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으로, 본칙 20개의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조문 체계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 본칙(20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제5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제8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제6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제3장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제14조(연수)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학생별 지원·관리)	제16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제13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제4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공유 등	
제17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9조(개인정보 처리정지 등)
제18조(정보의 요청 및 활용)	
제5장 보칙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 부칙(1개 조문)	

2. 주요 조문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제정안 제1조는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복지·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 제정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원대상학생”, “학교”, “보호자”, “교육행정기관”을 정의하고 있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의 지원 나.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2. “지원대상학생”이란 제10조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제정안 제1조는 학생이 겪는 어려움의 범위를 “학교와 학교 밖 생활”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학생이 ‘학교 내’와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2조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의 지원 및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으로(안 제1호),

“지원대상학생”을 제10조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으로(안 제2호),

“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안 제3호),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로(안 제4호),

“교육행정기관”을 시·도의 교육관서로(안 제5호) 각각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 제2조제1호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의 지원(가목)’ 및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나목)’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나목의 ‘학생 등’의 대상이 가목의 ‘지원대상학생’을 제외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나목의 ‘학생 등’에게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있는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불명확한[6] 측면이 있음.

제정안 제2조제3호에서는 학교의 범위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6)「법제이론과 실제」, 국회법제실, 2019, p.51
이는 수범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법 집행자가 객관적 판단지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규범의 문언뿐만 아니라 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 해석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같이 교육감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이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성인 학습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학교밖 청소년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므로 학생맞춤 통합지원의 '통합적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학교에 포함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유치원 역시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이고,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7]으로 '24.6.27.부터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음을 고려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한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유보통합의 이행 수준은 중앙 컨트롤타워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것에 그치며 여전히 유치원은 교육감이, 어린이집은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형태의 이원화된 구조이므로 향후 유보통합의 추진 경과를 고려하며 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7)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일부개정]

(2)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제4조)

제정안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과 필요한 재원·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책의 시행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등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 제4조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해당 법률이 일반법[8]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원활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개발 3.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와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4. 학교 및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 5.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과 평가 및 조사·연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8)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법제실, 2019, p.27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법률이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별법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와 교원 등은 보호하거나 지도하는 학생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과 재원·인력의 확보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 것은 교육급여[9]와 같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별 사업을 모두 포괄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제정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은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 대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책무'를 명확히 한 것임.

한편, 제정안 제4조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

9) < 교육급여 개요 >
- ㅇ (개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 ㅇ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ㅇ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22년, 약 31만명 수급)
- ㅇ (지원내역) 교육활동지원비(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고교 교과서·입학금·수업료(실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서는 학생 정보의 수집·축적이 필요[10]하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및 처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므로 집행상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간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제정안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교원 등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계획·시행계획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구속적인 행정계획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라 하더라도 공동체 및 국민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11],

여타 제정법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규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므로[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과 관련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 등 전담인력 충원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13]이고, 이미 시범사업 운영으로

10) 제정안 제19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참고.
11)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법제실, 2024, p.266
1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등

교육복지사의 업무과중이 시작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전담인력과 그에 맞는 처우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음.[14]

13) '23.11. 기준 전체 11,974교(초·중·고·특수) 중 교육복지사 배치교 1,648교(13.7%), 미배치교 10,326교(86.3%)

2023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4,719교 중 교육복지사 미배치교는 3,060교(64.64%)

1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3)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신설(안 제5조～제6조)

제정안은 시·도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함)를 두고(안 제5조),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함)를 두도록(안 제7조) 규정하려는 것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5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시・도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은 시・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감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4. 제8조에 따른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5.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도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시·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장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지역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는 모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공통적인 심의 사항은 ①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②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③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이고,

지역위원회와 달리 시도위원회는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또한 심의 사항으로 함.

시도위원회 외에 교육지원청에도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감 뿐만 아니라 교육장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주체로 참여하게 하려는 것으로, 다층적인 지원 주체를 두어 세심하고 맞춤화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4)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안 제7조~제8조)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함)로 지정 및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7조),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지원센터를 총괄·관리하고 지원센터 간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8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사업의 운영 지원 2.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 분석·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와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지원

5. 제14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개발·보급
6.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시책의 총괄·조정
2.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지원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관리 및 지원센터간의 연계
3.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4.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
5. 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

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장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지원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관리 및 지원센터간의 연계
2.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3.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③ 시·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지정할 수 있고 지역지원센터의 명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 제7조 및 제8조는 교육부장관에게는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시도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도 교육부 소관으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위기학생 상담·치유, 교육복지사업 지원 등을 위한 기초학력지원센터, 위(Wee)센터, 교육복지센터 등의 지원센터[15]가 설치되

거나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센터와 신설되는 중앙지원센터, 시도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예산 및 인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정안 제8조제3항에서 시·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교육행정기관 내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학생들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시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설치' 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설된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나 개

---

15) 【 학생 지원센터 운영 현황 】

(2023년 4월 기준, 자료: 교육부)

구분	근거 법령	운영 현황
기초학력지원센터	「기초학력 보장법」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 4개 ※ '22.10.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183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중
위센터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	학교: 위(Wee) 클래스 8,863개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206개소 교육청: 위(Wee) 스쿨 17개교 가정형 위(Wee)센터 19개소 병원형 위(Wee)센터 14개소
교육복지센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시도교육복지센터: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안전망: 156개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복지센터의 경우 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가 운영

별 지역의 인력·예산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통해서라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이해됨.

참고로, 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31억 4,500만원(연평균 46억 2,9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는 안 제6조에 따른 시·도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안 제8조에 따른 시·도지원센터 설치·지정 비용을 고려한 것임.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6조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99	99	99	99	99	497	99
안 제8조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4,329	4,428	4,528	4,631	4,732	22,647	4,529
합 계	4,429	4,527	4,628	4,730	4,831	23,145	4,62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9조)

제정안 제9조는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실태조사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실태조사에 강제성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지원대상학생의 선정(안 제10조)

제정안은 학생이나 보호자, 교직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절차를 거쳐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교육감이나 교육장 또한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학생별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선정 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선정 여부 및 그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원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대상선정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선정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유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①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이 학교의 장에게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줄 것을 요청하면 학교장이 선정하는 방법과,

② 학교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선정을 요청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음.

학교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학교 내에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으로, 지역 내 협력체계의 도움을 받아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제정안은 학교의 교직원도 지원대상학생 선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려움에 있는 학생의 조기 발견 및 통합지원을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의 일상생활을 관찰할 수 있는 교직원도 지원대상학생 선정 요청자로 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임.

(7)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안 제11조)

제정안 제11조는 학교의 장이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교육복지 지원, 상담 지원, 학습지원교육 및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 등을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관리하되,

예외적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느 절차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고, 타 학생의 학습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위기학생의 동의 없이도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춰 제공·관리할 수 있다. 1.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2.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 연계된 지원 4.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과 연계된 지원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연계된 지원 6.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습지원교육과 연계된 지원 7.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 8. 「진로교육법」제11조에 따른 진로상담 관련 지원 9.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학생의 보건관리·안전관리 관련 지원

10. 복지서비스, 의료지원 등 연계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제공·관리하는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직을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복지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2. 학생 상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3.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협의회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내 위원회
③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학생(이하 이 조에서 “위기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기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이루어진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방법·절차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정안 제11조제1항과 제3항은 제정안 제10조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지원, 상담 지원 등을 학생의 필요에 맞춰 제공·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제정안 제11조제4항은 “예외”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문제, 아동학대 등으로 학습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학생의 경우,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생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으며, 위기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학습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은 보호자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까지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과, 위기학생이 타 학생의 학습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까지 위기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적기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타당한 규정으로 보임.

다만, 긴급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원대상학생에 해당하는지를 학교의 장이 판단하려면, ‘현저하게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상황인지, ‘특별히 교육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인데,

이는 긴급지원 여부를 학교의 장의 판단에 위임한 것으로 보여 학교의 장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여 사실상 긴급지원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

한편, 제정안 제11조제2항은 기존에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던 교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교에서 이미 구성하여 운영 중인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8) 학생별 지원·관리 및 업무의 지도·감독(안 제12조～제13조)

제정안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지원대상학생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지원 및 학습지원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교육감과 학교장은 이 업무를 교육감이 지정한 시·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기관·단체 등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의 요건 또한 규정하고 있음(안 제12조).

또한, 교육감의 위탁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 권한과 장부·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안 제13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12조(학생별 지원ㆍ관리)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공 계획 수립 2.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지원과 학습지원 등의 연계ㆍ제공 3. 지원대상학생의 변화 및 성장 정도에 대한 지속적 확인 및 관찰ㆍ관리 ② 교육감은 시ㆍ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기관에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기간에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수요자인 지원대상학생 중심의 지원이 되려면 지원대상학생 발굴 단계에서부터 통합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므로,

제정안 제12조는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지원대상학생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관리를

수행하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시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제정안 제12조제5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위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제13조에서 위탁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 권한과 장부·서류 등에 대한 검사 권한을 명시한 것은 위탁기관의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9) 연수(안 제14조)

제정안 제14조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 등에 대한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14조(연수)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 등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교원 등에 대한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진단하고, 지역사회와 다양한 전문기관의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교원 등 해당 분야 관련자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에 연수를 통해 교원 등 관련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해 학생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안을 도출하는 등 역량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0)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안 제15조)

제정안 제15조는 교육감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체계 구축 시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사, 변호사 등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및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및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학습지원, 복지지원, 상담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아동

및 청소년 복지를 담당하는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관이 협력함으로써 학생들은 더 포괄적인 범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양한 전문기관이 연계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위기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협력체계 구축 시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것은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지자체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됨.

(1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등(안 제16조)

제정안 제16조는 교육감에게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16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의 학업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2.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취학, 재입학, 진학 등 지원 및 학교 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원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 등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총괄·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부터 제11조[16]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제12조[17]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1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18]에서 각급 학교의 장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서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지원정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 ⑤ (생 략)

1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1. ~ 6. (생 략)

(12)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17조~제18조)

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안 제17조),

교육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다른 시·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의 교육감을 통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17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지원대상학생 발견, 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4.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각목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한 이력 정보
2.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인적사항, 학적사항 및 출결상황에 관한 정보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필요한 정보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보유한 정보
5. 제1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6. 제18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집·연계·가공한 정보
7.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하는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관한 정보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9.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시·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해당 기관 및 단체는 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⑦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는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시·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기관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 지정, 보유기간,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정보의 요청 및 활용)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등"이라 한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기존 지원 정보,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다른 시·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국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교육감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관할 구역 내의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가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연계·가공 및 제공받은 정보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감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상담, 복지 지원 등 민감한 학생 정보에 대한 수집·관리·연계·활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장기적·체계적인 학생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굴 및 개입을 위해서 필요한 학생 정보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보임.

이에 제17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활용하는 정보시스템[19]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제정안 제17조제3항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주체에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것은,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 지역 간 이동으로 그동안의 지원이 단절될 수 있으며, 조기 발굴 및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을 위한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사례와 같이 전체 시·도교육청을 포괄하는 공통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조치로 보임.

---

19) ※ [참고자료 3]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입법례 비교 참고

제정안 제17조제7항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만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항은 기관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 지정, 보유 기간, 개인정보 취급 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해당 정보에는 지원대상학생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동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가공·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마련한 조치로 보임.

제정안 제18조는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른 시·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연계·가공해 교육장과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지원대상학생의 정보, 지원 내용 등 누적된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간 유기적 공유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보임.

(13) 개인정보 처리정지 등(안 제19조)

제정안 제19조는 위기학생의 정보나 학생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19조(개인정보 처리정지 등)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위기학생의 정보 2.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학생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개인정보 처리정지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20]에 근거한

20)「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것으로, 정보주체(개인의 정보가 처리되는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임.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요청한 경우에도 처리 정지 등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정안에서는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음.

한편, 위기학생의 정보 등을 예외로 규정한 것은 가정폭력 등의 상황에서 보호자의 적절치 않은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등에 대응하여 위기학생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동의 철회,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0조)

제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0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대신, 특정 권한이나 업무를 교육감, 교육장, 학교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함으로써, 각 주체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그에 적합한 기관에 맡김으로써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15) 부칙(안 부칙)

제정안은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에는 3개월, 대통령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에는 6개월,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둠.[21]

제정안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신설하고 시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등을 설치·지정하는데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고,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은 학년도 단위로 운영되므로 학기 중에 통합지원 체계를 시작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학년도에 맞춰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됨.

문 의 처
02)6788-5184

21)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p.821
하위법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 대통령령의 정비를 위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부령의 정비를 위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사례가 많다. 한편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참고자료 1 교육부 학생 지원제도 및 지원사업 현황

□ [교육복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급여 대상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 지역교육청에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구축

[교육복지안전망 주요 활동 내용]

- **(학교지원)** 학교에서 의뢰한 학생 상담 · 욕구파악-지원 · 연계-모니터링 등 학생 지원
- **(가정방문)** 건강·위생상태 확인, 맞춤형 긴급 물품 지원, 학생·학부모 상담 등
-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가용 자원 연계, 긴급복지 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 연계 등

□ [학업지원] 학교 안·밖의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지원 지속 확대, 학업중단숙려제 및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 ('22) 학업중단숙려제 25,703명 / ('23) 학교 내 대안교실 1,337교

□ [심리정서] 심리·정서, 치유, 복귀 등 학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관 등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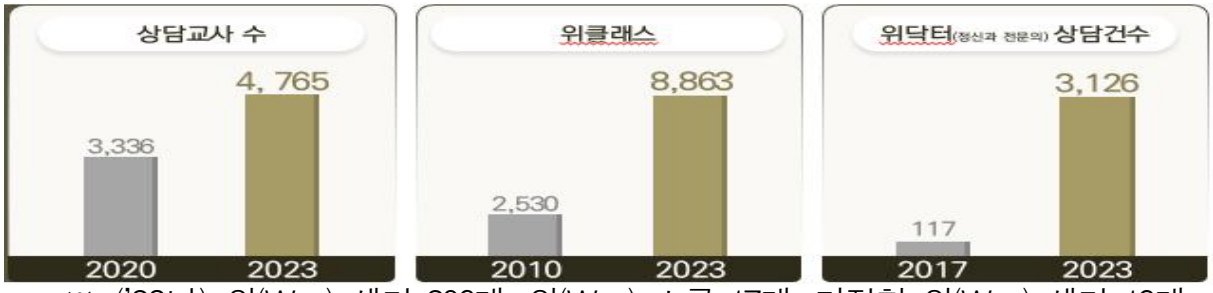

※ ('23년) 위(Wee) 센터 206개, 위(Wee) 스쿨 17개, 가정형 위(Wee) 센터 19개

□ [다문화·특수교육]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확대, 특수교육기관 확충 등

□ [안전지원] 학교폭력,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학생 등 지원 강화

○ 학대 피해학생 비밀전학제도 정비('22.학생부 기재요령 개정), 피해아동 등 교학습 지원 제도화('21.10.), 예비소집 미응소 학생 소재·안전 확인('22.3.) 등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기관 확대('21. 158개소→'22. 303개소)

자료: 교육부

□ 교육부 학생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지원 근거	대상 학생(학교) 등	기준 년도
교육복지 우선지원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56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대상]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학생,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4,720교 329,154명	’23.11.1.
교육복지 안전망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56조, 교육복지안전망 사업계획 - [대상] 교육취약학생	176개 안전망 5,917교 59,528명	’23.11.1.
교육비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내지 60조의 10 - [대상] 교육취약학생	593,800명 (중복 포함)	’23.2.
교육급여	-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교 재학생	302,737명	’23.12.31.
아동학대 예방	-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 제25조 - [대상]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학대 피해학생 수 18,474명 (복지부 통계)	’22.
신학기 미인정결석 점검	-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2, 제92조의2 - [대상] 모든 학생	모든 학생	’24.4.
위(Wee) 프로젝트	-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 「위(Wee)프로젝트 사업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대상] 위기학생 및 학교부적응 학생	Wee클래스 8,863교 Wee센터 206개 Wee스쿨 17교 가정형 Wee센터 19개 병원형 Wee센터 14개	’23.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 [대상] 초·중·고 전체 학생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초·중·고 전체 학생 피해학생 26,050명 가해학생 33,732명	’22.
기초학력	- [근거]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 [대상] 학습지원대상학생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500교 두드림학교 7,126교	’23.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 한국어학급운영	- [근거] 「다문화가정지원법」 제5조, 제6조 - [대상] 시·도교육청에서 공모·지정한 유·초·중·고등학교 등	다문화학생 181,178명 정책학교 수: 485교 한국어학급 수 : 450학급	’23.

사업명	지원 근거	대상 학생(학교) 등	기준 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54조 - (대상) 학업중단(위기)학생* *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된 학생,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등	25,703명	’22.
학교 내 대안교실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54조 - (대상) 학교부적응학생, 대안교육 희망학생 등	1,337교	’23.
특수교육 대상자	- (근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109,703명	’23.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기반 구축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	-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대상) 모든 학생	전체 초중등 학생 대상	-

자료: 교육부

참고자료 2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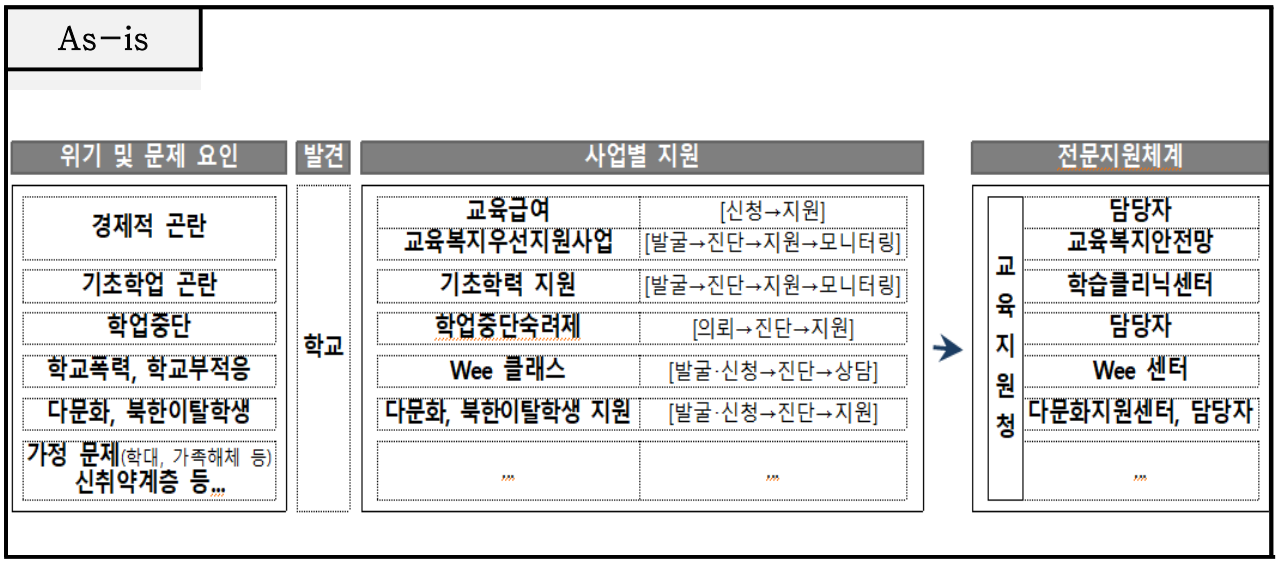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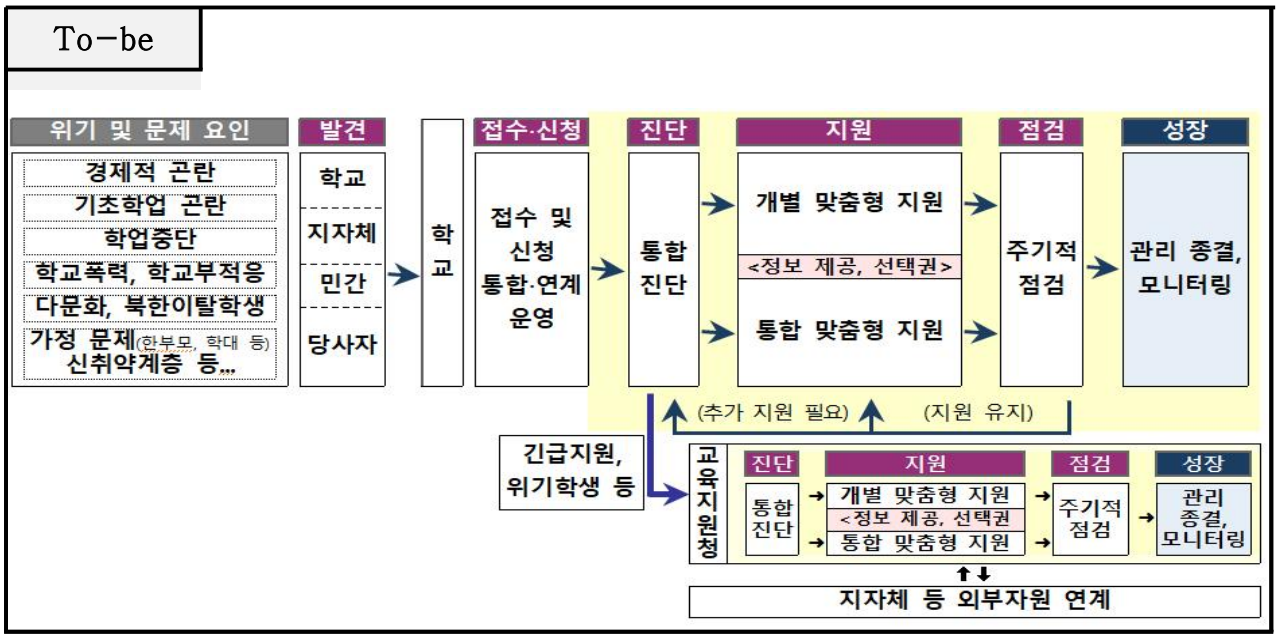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참고자료 3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관련 입법례 비교

구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보시스템 (제정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규정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제19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아동복지법」 제15조의2
구축·운영 주체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시스템 구축 목적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지원 대상학생 발굴, 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제19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 기록 및 관리(제37조제2항)	보장기관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제24조의2제1항)	**아동복지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제15조의2 제1항)
대상 정보	제19조제2항 각 호 명시	-	제24조의2제2항 각 호 명시	제15조의2제2항 각 호 명시
정보의 제공 요청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제19조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제37조제5항)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제24조의2제4항) ※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그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4조의2제5항)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제15조의2 제2항)

연계정보 이용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목적),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대상), 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연계된 정보를 이용(범위)(제19조제6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대상),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목적),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범위)(제37조제6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대상), 사회보장급여와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담・안내하는 데 필요할 경우(목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범위)(제24조의2제7항)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목적), 제2항 각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대상),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연계된 정보를 이용(범위)(제15조의2제4항)
시스템 위탁	제19조제4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	제24조의2제10항(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15조의2제5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제19조제5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을 마련(제37조제4항)	제24조의2제8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제15조의2제3항)
정보관리 및 정보파기 의무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 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급(제19조제7항)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기관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 지정, 보유기간, 개인정보 취급 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제19조제8항)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제38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 금지(제38조제2항)	<u>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u>(제31조), 보장기관의 장 및 <u>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u>(제34조)	-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제20조 제5항)			
개인정보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제21조)			

자료: 교육부